

#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요소별 관측방법

제정 2014. 12. 18. 기상청 고시 제2014-13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요소별 관측방법)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 1. 지진 요소

관측구분	관측방법	관측요소
기본관측	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	1. 지진발생시각, 지진발생위치 및 규모 2. 지진파형 자료 3.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4. 최대지반속도 및 최대지반가속도 5. 지진발생 깊이
보조관측	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	1. 진도 및 지진현상

## 2. 지진해일 요소

관측구분	관측방법	관측요소
기본관측	지진해일파고계에 의한 자동관측	1. 지진해일 도달시각 2. 지진해일 높이 3. 해수면 높이
보조관측	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	1. 지진해일 높이 2. 해수면 높이

## 3. 화산 요소

관측구분	관측방법	관측요소
기본관측	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	1. 지진발생시각, 지진발생위치 및 규모 2. 지진파형 자료 3.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4. 최대지반속도 및 최대지반가속도 5. 지진발생 깊이
	인공위성에 의한 자동관측	1. 화산가스 2. 화산재 3. 지표변화
	지구물리 자동관측	1. 중력 2. 자기장 3. 지형변화
	지구화학 자동관측	1. 화산가스 분출량의 변화 2.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농도변화
보조관측	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	1. 화산의 분화 2. 화산재 3. 화산가스의 분출(식물 고사 등) 4. 지표변화
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,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.

## 부칙

이 고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